

「음악대학 연습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」

5. 음악대학 소속 학과(전공)으로 수학 중인 교류학생·교환학생 및 특별 수강생

6. 그 밖에 음악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자

제정	2012.06.15.
개정	2013.06.01.
개정	2015.10.19.
개정	2017.11.15.
개정	2021.09.01.
개정	2022.04.01.
<u>개정</u>	<u>2024.06.12.</u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음악대학 연습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음악대학 53동, 54동 연습실 및 55동 스페이스 펜타, 리사이틀홀에 적용한다. 55동 스페이스펜타, 리사이틀홀은 학생 개인 연습 목적 예약·이용을 불허하며, 교원의 클래스 연주, 간담회, 세미나 등의 용도로만 예약·이용을 허용한다. 해당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② 음악대학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부 호실을 연습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, “연습실”로 통칭한다.

제3조(운영시간) ① 연습실의 운영시간은 7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.
② 연습실을 이용하는 자는 22시 45분까지 건물에서 퇴실 완료하여야 한다.
③ 천재지변, 전염병, 시설물 점검, 입시, 논문제출자격시험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연습실의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,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4조(이용자격) 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음악대학 교직원
2. 음악대학 재학생 및 연구생
3. 음악대학 명예교수 등 퇴직 교직원
4. 음악대학 소속 학과(전공)의 다전공자로 선발되어 해당 전공 과정을 이수 중인 자

제5조(이용원칙) ① 이용희망자는 우리 대학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신청(이하 “예약”으로 칭한다)을 해야 하며, 승인을 득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.

② 연습실의 일일 최대 예약·이용시간은 예약 횟수와 관계없이 6시간으로 제한한다. 다만, 학생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추가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그랜드 피아노가 비치된 실기지도실의 경우 피아노 전공자는 우선순위로 예약 신청 가능하다.

④ 온돌이 설치된 실기지도실의 경우 국악전공자는 우선순위로 예약 신청 가능하다.

⑤ 연습실 이용이 승인된 이후에도 우리 대학의 판단에 따라 예약시간 시작 전까지 승인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 통보한다.

제6조(예약) ① 1회당 최소 30분 최대 3시간까지, 최초 1시간은 1시간 단위로, 이후 부터는 30분 단위로 예약 가능하다. (단 최초 예약은 1시간 이상만 가능하며, 이후 30분 단위로 가능하다)

② 학생의 예약은 예약일 기준 1주일 전부터 예약시간 전까지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교직원의 예약은 예약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예약시간 전까지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그랜드 피아노가 비치된 실기지도실의 경우 피아노전공 학생은 예약일 기준 1주일 전부터, 기타 전공 학생은 예약일 기준 3일 전부터 이용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.

④ 온돌이 구비된 실기지도실의 경우 국악전공학생은 예약일 기준 1주일 전부터, 기타 전공 학생은 예약일 기준 3일전부터 이용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.

⑤ 강의실을 연습실로 활용하는 것은 예약자 기준 월 4회로 제한한다. 다만, 제3조제3항의 사유로 연습실 운영이 축소·제한되는 경우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
⑥ 이용자는 예약 승인 이후 예약시간 전까지 예약 취소가 가능하며,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.

제7조(이용자준수의무) 연습실의 시설 보존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외부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행위
2. 비품 및 기타 시설물을 다른 호실, 교외 등으로 무단 이동·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
3. 학생증, 교직원증 등의 신분증 또는 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등 예약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
4. 음식물 반입·취식·흡연·낙서 등 연습실이 오염될 수 있는 행위
5. 연습실에 비치된 악기를 임의로 조율하는 행위
6. 연습실을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기타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행위
7. 예약 후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행위
8. 제5조제2항의 일일 최대 예약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예약 이용하는 행위

제8조(이용자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 등) 제7조 위반자는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 통보한다.

1. 예약 승인된 이용자가 예약시간 전까지 예약 취소하지 않고 해당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 노쇼(No-Show, 미출입으로 인한 취소) 발생 시, 적발 익일부터 아래와 같이 제재하며, 제한 기간 내 기예약 건은 강제 삭제할 수 있다.

적발 횟수	제재 사항
1회	1주일간 예약 및 이용 제한
2회	2주일간 예약 및 이용 제한
3회 이상	1개월간 예약 및 이용 제한

2. 예약 없이 연습실을 이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하며, 즉시 퇴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적발 횟수	제재 사항
1회	1개월간 예약 및 이용 제한
2회	3개월간 예약 및 이용 제한
3회 이상	6개월간 예약 및 이용 제한

3. 제5조제2항의 일일 최대 예약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예약 이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하며, 초과 예약 건은 강제 삭제할 수 있다.

적발 횟수	제재 사항
1회	경고
2회	1주일간 예약 및 이용 제한
3회 이상	2주일간 예약 및 이용 제한

4. 제1항, 제2항, 제3항에 따른 적발 횟수 및 제재 내역은 최후 적발 일자로부터 2주일 경과 후 삭제한다.

5. 연습실에서 생수를 제외한 식음료의 반입, 취식, 방지 등 적발 시 학장단의 승인하에 연습실 전체 폐쇄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, 발동 시 학장단의 심의를 거쳐 재개방을 승인한다.
6. 제7조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, 사안이 중대하여 연습실 운영 및 이용 저해, 이용자 안전 위협 등 기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장단이 의결하여 추가로 제재할 수 있다.
7. 제7조 위반자가 학생인 경우 「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」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.

제9조(시설 및 비품 등 분실·파손에 따른 변상 이행 절차 및 제재) ① 연습실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·파손한 자 또는 이를 목격한 자는 음악대학 행정실에 분실·파손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제7조를 위반하여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·파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,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, 변상 시점에서 구매·설치 가격에 상당하는 비용을 변상하도록 한다.
- ③ 변상 시, 시설 및 비품 등의 재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.

부 칙(2012.6.15.)

이 규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6.1.)

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10.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 및 경과조치) 제3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은 전산시스템에 반영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7. 11. 1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음악대학이 관리하는 기타 공간(강의실, 예술관 등)에 대하여

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.

부 칙(2021.9.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. 9. 1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음악대학이 관리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.

부 칙(2022.4.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. 4. 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6.1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. 6. 12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용원칙에 관한 특례) 음악대학 54, 55동 리모델링 사업 완공 및 연습실 전면 운영 재개시까지 제5조제2항의 연습실의 일일 최대 예약·이용시간은 예약 횟수와 관계없이 2시간으로 제한한다. 다만, 학생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추가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.